



문서번호 향의협 2025-053

시행일자 2025.02.18.

수신 회원 제위

참조

선결			지시	
접수	일자		결재	
	시간			
	번호		공람	
	처리과			
	담당자			
	심사자		심사일	

제 목 2025년 1차 항공신체검사 전문의사 신규 및 보수교육 일정 안내

-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2025년도 제1차 항공전문의사 신규 및 보수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교육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2025년 3월 12일(수) 23시**까지 협회 홈페이지 내 학술대회/교육 탭 -> 학술대회/교육 일정(<https://www.asmak.or.kr/html/?pmode=inputList>)에서 사전등록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교육은 수료증이 발급되는 강의로, 추후 항공전문의사 지정을 희망하실 경우 항공안전법 제 49조 동법 시행규칙 105조 2항 항공전문학사의 지정기준에 따라 지정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처음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은 신규 교육으로 신청해 주시고, 기존에 지정된 항공전문의사는 보수교육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수교육은 최초 이수일로부터 3년마다 이수하셔야 합니다.**

- 아 래 -

- 교육 일시 : 2025년 3월 19일(수) ~ 21일(금) 3일간, 오전 09:00 ~ 오후 06:00
- 교육 장소 : 한국공항공사 항공보안교육센터 2층 B강의실 (붙임 2. 참조)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 이용 바랍니다.)
- 교육비 : **협회 정회원 또는 평생회비 선납 시 교육비 감면 적용**

구분	신규교육	보수교육
비회원/일반회원	40만원	10만원
정회원	38만원	8만원
평생회원	35만원	6만원

- 인원 : 30명 (선착순 마감)
- 안내사항 : 중식 제공, 주차비 지원 불가, 강의자료는 교육 일주일 전 PDF파일로 제공되며 태블릿, 노트북 등의 전자기기 사용 가능, 견학은 상황에 따라 장소 변동 가능성 있음
- 관련 법령 : 붙임 1. 참조
- 교육일정표 : **추후 공지**
- 문의 : TEL - 02) 6091-6101 / E-mail - asmak@hanmail.net

사단법인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 회장 장 정 순



붙임 1. 관련 법령

항공안전법 제49조(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0조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의학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은 전문의사(이하 “항공전문의사”라 한다)를 지정하여 제40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교육이수실적, 경력 등 항공전문의사의 지정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③ 항공전문의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5조(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

- ① 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항공전문의사로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9호서식의 항공전문의사 지정신청서에 제2항에 따른 항공전문의사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제2항제2호에 따른 전문의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0. 2. 28.>
- ② 법 제49조 제2항에 따른 항공전문의사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2. 28.>
 1. 항공전문의사 지정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직전 1년 이내에 제5항에 따른 항공의학에 관한 교육 과정을 이수할 것
 2.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로서 항공의학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거나 같은 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치과의사와 한의사는 제외한다)일 것
 3. 별표 13에서 정한 항공신체검사 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 기준에 적합한 의료기관에 소속(동일 지역 내에 있는 다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있을 것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항공전문의사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항공전문의사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⑤ 법 제49조에 따라 항공전문의사로 지정받으려는 사람과 항공전문의사로 지정받은 사람이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은 다음 표와 같다.<개정 2020. 2. 28.>

교육과목	교육시간	
	항공전문의사로 지정 받으려는 사람	항공전문의사로 지정 받은 사람
항공의학이론	10시간	6시간
항공의학실기	10시간	7시간
항공관련법령	4시간	3시간
정신계질환 판정 및 상담기법	4시간	3시간
계	28시간	19시간(매 3년)

- ⑥ 제5항에 따른 교육의 세부적인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⑦ 항공전문의사는 소속기관의 명칭 또는 주소가 변경되어 항공전문의사 지정서를 재발급 받으려면 별지 제59호서식의 항공전문의사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1. 6. 9.>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13(항공신체검사 의료기관 시설 및 장비기준)

항공신체검사 의료기관 시설 및 장비기준(제105조제2항제3호 관련)

1. 시설기준

시설의 종류	
진료실	임상병리실 (혈액·소변 검사에 필요한 장비를 갖출 것)
신체검사실	방사선실
청력검사실	대기실

2. 의료장비기준

장비의 종류	
신장계	심전도기
체중계	※ 운동부하심전도기
청진기	시력표/시력검사기
혈압계	시야검사기
이비경	사위검사기
검안경	안압측정기
흉부X선검사기	색각검사기
소변검사스틱	※ 입체시측정기
혈액검사기	※ 안저검사기
※ 폐기능검사기	청력검사기
※ 뇌파검사기	※ 청력검사부스

비고

1. 시설 및 장비의 기준량은 1이다.
2. ※는 권고 장비이다.

[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64호] 제5조(항공전문의사의 권한과 의무)

항공전문의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1. 법 제40조에 따른항공신체검사의 실시
2. 법 제42조에 따른항공신체검사증명 소지자의 신체상태저하에 대한 판정
3. 항공신체검사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한항공신체검사증명신청서,항공신체검사증명서 및 관련기록의 작성 및 영구보관
4.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발급대장 영구보관
5. 그달 실시한항공신체검사결과를 다음 달 5일까지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보고
6. 항공신체검사증명 관련 기록물에 대한 보안 유지
7. 협회에서 실시하는 재심사를 위해 요구되는 추가자료 제공
8. 항공전문의사 정기 전문교육 이수

붙임 2. 교육 장소 안내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209 한국공항공사 항공보안교육센터

주차공간이 매우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요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상세위치는 사이트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airport.co.kr/kcaa/cms/frCon/index.do?MENU_ID=330)

교통편 :

1) 지하철 이용시

- 5호선/9호선/공항철도/김포골드/대곡소사선 '김포공항역' 하차
 - 국내선 1층 Gate4를 나와서 ※화물청사행 공항순환버스 탑승, 한국공항공사 항공보안교육센터 하차
 - 한국공항공사 항공보안교육센터(화물청사 앞)정거장 하차 후 횡단보도 건너서 100M 이내
- ※ 공항순환버스 안내



공항순환버스 이용안내

이용요금	무료
운영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6:00 ~ 23:00 여객+화물청사 • 08:00 ~ 23:00 여객청사전용
운행간격	<p>여객 + 화물청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6:00 ~ 07:00 - 25분 • 07:00 ~ 21:00 - 15~20분 • 21:00 ~ 23:00 - 25분 <p>여객청사전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8:00 ~ 23:00 (여객청사전용) - 12~ 15분
승차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선] 1층 1번 게이트 나가서 우측 5번 정류장 • [국내선] 1층 4번 게이트 나가서 좌측 8번 정류장

2) 버스 이용시

- 3번/12번/50번/50-1번 '김포공항화물청사' 하차

3) 자가용 이용시 : 네비게이션 목적지 '항공보안교육센터 주차장'으로 설정